

의안번호	2210322
의 퇴 인	맹성규의원
회 답 일	2025.9.15.
추계번호	25B2696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5,700만원, 2031년 4억 8,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3억 2,500만원(연평균 4억 6,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5조)	557	381	436	462	489	2,325	465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건설·부동산통합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 (통합위원회의 소관 사무)	통합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건설·부동산분쟁의 조정(「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재정을 포함한다) 2. 건설·부동산분쟁과 관련된 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건설·부동산분쟁과 관련된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4. 건설·부동산분쟁과 관련된 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통합위원회에 위탁하거나 통합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 조정 등의 업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 (통합위원회의 구성)	통합위원회는 위원장(이하 “통합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2항) 1. 건설공사·부동산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률·경제·경영 또는 건설공사·부동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공사·부동산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건설공사·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규정
4	안 제12조 (사무국 등)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제1항)	의무규정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둠(제2항)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건설·부동산분쟁 조정, 건설·부동산분쟁과 관련된 연구 3. 그 밖에 통합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통합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통합위원회는 건설·부동산분쟁과 관련된 피해의 신고, 건설·부동산분쟁 조정의 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 (전문위원)	통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건설·부동산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5조 (분쟁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통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정위원회(이하 “분쟁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분쟁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함(제2항)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통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통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통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4.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통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그 밖에 분쟁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7	안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분쟁별조정위원회에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조정소위원회와 재정소위원회를 두어야 함(제1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장이 됨. 다만,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제2항)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가. 조정소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나. 재정소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4.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위원회 설치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
2	안 제6조(통합위원회의 소관 사무)		
3	안 제7조(통합위원회의 구성)		
4	안 제12조(사무국 등)		
5	안 제15조(분쟁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6	안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7	안 제13조(전문위원)	×	• (제3호) 통합위원회 전문위원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재하므로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산하에 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제정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부동산 관련법령”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¹⁾, 건축분쟁전문위원회²⁾가 설치·운영중

1)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이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³⁾의 경우 해당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이 시행 예정(2025년 11월 28일)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으로, 제정안 시행에 따라 이상의 4개 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통합위원회로 재편되므로, 통합위원회 설치·운영비에서 기존 위원회 운영비를 차감한 순증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산함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⁵⁾ 적용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2)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5.27. 제정, 2025.11.28. 시행예정)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동산개발사업법」은 2025.11.28.부터 시행예정으로 현재는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조정기구로 국토교통부훈령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5)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5.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통합위원회 ①사무국 설치·운영비용과 ②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비용에서 통합위원회로 재편되는 현행 4개 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차감한 순증비용
 - 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하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정가능한 사무국 및 산하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
 - － 제정안 시행에 따라 통합위원회로 재편되는 4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운영비용을 차감함

가. 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은 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용과 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산

(1) 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용

- 사무국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구분되며, 종전 위원회 운영인력을 고려하여 통합위원회 재편에 따른 추가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를 추산함
- (인건비) 국토교통부는 종전 4개 위원회의 현행 업무량과 인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2인의 연구원, 1인의 연구보조원 및 5인의 보조원 등 8인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인건비는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표 2] 위원회별 조정 신청건수 및 신규 필요인력 추산

구분	신청건수(건)		신규 필요인력(명)			비고
	2023	2024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32	42	1	—	1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35	193	—	—	3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정규직 9명, 계약직 3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	—	1	—	예상 신청건수: 30~40건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	81	1	—	1	—
합계	—	—	2	1	5	—

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 법 시행예정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3] 통합위원회 신규인력 인건비: 2025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월임금 (A)	상여금 (연,B)	퇴직급여 충당금(연,C)	연인건비 (A×12+B+C)	인원 (명)	금 액
연구원	5,683,276	22,733,104	5,683,276	96,615,692	2	193,231,384
연구보조원	3,799,078	15,196,312	3,799,078	64,584,326	1	64,584,326
보조원	2,849,404	11,397,616	2,849,404	48,439,868	5	242,199,340
합계					8	500,015,050

주: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무국 경상경비) 사무국 경상경비는 일반경비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

○ (일반경비) 통합위원회의 홍보 및 사례집 배포, 사무용품,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일반경비는 약 149.7백만원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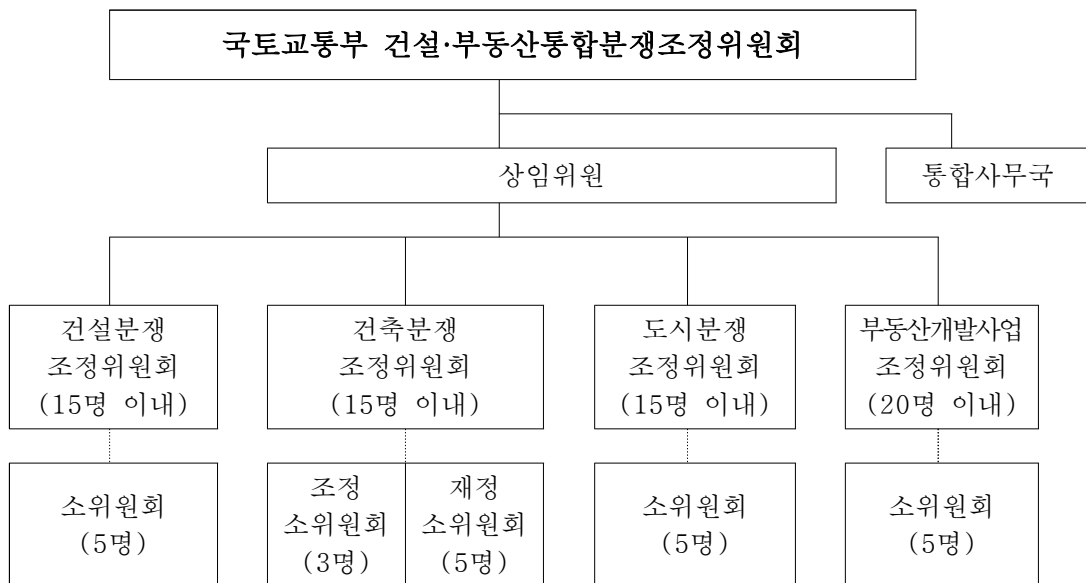
- 교육 및 홍보비: 건축분쟁위원회 홍보예산(17백만원)을 적용(68백만원=17백만원×4
개 위원회), 사례집 제작: 40백만원, 우편료(9.6백만원=0.8백만원×12개월), 여비
(32백만원= 8백만원×4개 위원회)
- (시스템 구축·운영비) 분쟁조정 신청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약 240

백만원(통합시스템 구축비(2억원: 기존 건축시스템 개편 등, 2027년 소요), 시스템 운영비(매년 3천만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 유지관리 요율에 따라 15%로 가정⁶⁾하며,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⁷⁾)

(2) 위원회 운영비용

□ (위원회 운영비) 통합위원회 운영비는 분쟁별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따라 지급되는 안건검토비와 임차료 항목으로 구분되며, 현재 운영중인 각 위원회별 실적치를 바탕으로 평균 운영횟수와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산함

○ 제정안에 따른 통합위원회와 산하 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위원 수: 종전 분쟁별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분쟁별조정위원회 위원 수: 건설 14명(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 건축 15인(당연직

6)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2차 개정판)」, 2022.8. 155쪽)

7)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0명, 위촉직 15명), 도시 15인(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부동산 17명(당연직 4명, 위촉직 13명)

- 소위원회 위원 수: 건설(5명), 건축(3명)⁸⁾, 도시(5명), 부동산(5명)
- 개회일 수 : 종전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실적과 향후 확대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함
 - 분쟁조정위원회(연간): 건설(6회), 건축(2회), 도시(4회), 부동산(4회)
 - 소위원회(연간): 건설(12회), 건축(30회), 도시(8회), 부동산(8회)
-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실 임차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당 평균 30만원을 적용하여 연간 2,220만원 소요예상(연간 74회×30만원)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4] 통합위원회 위원회 운영비용: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민간위원수	회의일수	단가(만원)	회의비 (백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분쟁조정 위원회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10	6	30	1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5	2	30	9
		도시분쟁조정위원회	14	4	30	17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13	4	30	16
		소계	52	16	—	59
	소위원회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5	12	30	1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¹⁾	3	30	30	27
		도시분쟁조정위원회	5	8	30	12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5	8	30	12
		소계	23	58	—	69
합계						128
임차료	개회일 수(74회)×30만원					22.2
합계						150.2

주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경우 개회 빈도가 높은 조정소위원회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
 2)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 설치 근거 법률이 시행예정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8)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경우 개회 빈도가 높은 조정소위원회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함
 9)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3) 추계결과

- 이상의 가정에 따라 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통합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용 (A=a+b+c)	895	718	772	798	825	4,009
인건비(a)	539	559	580	603	625	2,906
운영비(b)	156	159	162	165	169	811
시스템 운영비용(c)	200	—	30	31	31	292
위원회 운영비용(B)	151	151	151	152	152	758
합계(A+B)	1,045	869	924	950	978	4,766

나. 종전 위원회 운영비

- 제정안에 따라 통합위원회로 재편되는 종전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추계기간 동안 2025년 예산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종전 위원회 운영비: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5.4	10.8	16.3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80	372	37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	—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	100	100
합계	385.4	482.8	488.3

주 1.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 설치 근거 법률이 시행예정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2. 국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5,700만원, 2031년 4억 8,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3억 2,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	1,045	869	924	950	978	4,766
종전 위원회 운영비용	488.3	488.3	488.3	488.3	488.3	2,442
합계	557	381	436	462	489	2,325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